

회 비 규 정

회 비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구분) 회비는 가입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제3조(회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비”라 함은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와 연회비를 말한다.
2. “가입비”라 함은 회원이 가입시에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3. “연회비”라 함은 회원이 매 사업년도마다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4조(회비납부의 의무) 회원은 정관 제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회비를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 6. 12)

제5조(회비부과) ①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회비부과금액은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원종류별 회비부과 기준표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0. 4. 1, 2011. 7.19), <단서삭제 2011.12.27>

③ 만 70세 이상인 정상회원으로 종신회원에 가입하려는 자는 일반회원 연회비의 10배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회원종류와 관계없이 연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단, 기존 정상회원이 종신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비를 면제한다.(개정 2000. 4. 1, 2011.12.27, 2016. 1. 1, 2019. 10. 8)

④ <삭제 2009.12.22>

⑤ 경력관리자가 경력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비는 면제하되 별표1 회원종류별 회비부과기준표에 의한 당해연도 연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경력관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회비와 경력관리비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10. 1, 개정 2012.12.26, 2016. 1. 1)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소속 전력기술인들의 회비를 단체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의거 일반회원의 회비를 적용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1. 7.19, 개정 2016. 1. 1)

⑦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4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관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소속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약으로 회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

- ⑧회원관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지기간 동안 연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 1)
- ⑨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협회 발전에 공헌한 자는 회비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6)

- 제6조(징수방법)** ①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관리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회원가입서류 제출과 함께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가입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 6. 12, '16. 1. 1)
- ②기존 회원의 연회비는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연도 말일까지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99. 11. 12, '16. 1. 1)
 - ③삭제 <2000. 4. 1>
 - ④회원이 연회비를 미납하여 3년이 경과된 미납 연회비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아니하며, 미납내역만 기록·관리한다. (신설 '16. 1. 1)

- 제7조(회비의 수납)** ①회비는 현금, 신용카드, 우편환, 지로 등으로 수납한다. (개정 '09.12.22)
- ②회비는 중앙회 또는 시·도회에서 수납한다.(개정 '10.10.26)
 - ③협회가 회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소정양식의 영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납부자에게 발행하여야 하며, 지로용지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지로납부영수증으로 갈음한다. (개정 '16. 1. 1)
 - ④ (개정 '09.12.22) <삭제 '16. 1. 1>

- 제8조(회비미납자에 대한 조치)** ①회원이 당해연도 연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당해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16. 1. 1)
- ②삭제 <'97. 6. 12>
 - ③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협회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다.
 - ④삭제 <'97. 6. 12>
 - ⑤회원이 연회비를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고 일부년도 미납으로 자격정지된 상태에서 3년간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3년차 연회비 납부일 기준으로 회원의 자격정지를 해제한다. 다만,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선임직위에 관한 입후보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98. 5. 8, 개정 '16. 1. 1)
 - ⑥회원이 연회비를 3년간 연속하여 미납하였을 때에는 3년째되는 당해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원관리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제명조치를 한다. (신설 '16. 1. 1)

제9조(회비의 승계 및 환불) ①소속업체 지원으로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부서이동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업체에서 회비승계처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로 다른 자에게 회비승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계하게 할 수 있다. 단, 회비승계는 당해년도에 한한다. (신설 '07.10. 1, 개정 '12.12.26, '16. 1. 1)

②전력기술인이 경력신고와 함께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후 등급 등을 인정받지 못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할 수 있다. (신설 '07.10. 1), <단서삭제 '16. 1. 1>

③납부한 회비가 과·오납된 경우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환불 또는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10. 1)

제10조(보고) 각 시·도회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회비징수 실적현황과 회비납부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및 신규가입자 현황을 중앙회에 보고하고, 회비 등의 수입금을 송금하여야 한다.(개정 '07.10. 1, '10.10.26, '12.12.26)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에서 승계된 회원이 납부한 1996년도 회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 이전 대한전기기사협회에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일반회원으로 하며 직무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회비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협약에 의하여 단체로 회비를 납부한 기관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종신회비 납부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중 직무를 가진 자에게 부과된 일반회원 연회비와의 차액을 미납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정관 시행일(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7월 1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자는 회비를 완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97. 6. 12, '97. 10. 24, 2000. 4. 1, 2001. 12. 27, 2003. 1. 8, 2006. 1. 1, 2007. 1. 1, 2008.1 .1, 2011. 7.19, 2011.12.27, 2013. 3. 8, 2016. 1. 1, 2016. 7. 1, 2017. 7. 1)

회원종류별 회비 부과 기준표

(단위 : 원)

회비		부 과 기 준	가 입 비	년 회 비
회원				
직 무 회 원	설 계	설계업자, 설계사, 기술사	직무 : 100,000 보조 : 70,000	100,000
		설계보조자		70,000
	감 리	감리업자, 특급 및 고급 감리원		100,000
		중급, 초급 감리원		70,000
	선 임	전기안전관리사		100,000
		전기안전관리원 및 기타기술자		70,000
	대 행	전기안전관리사		100,000
		전기안전관리원		70,000
일 반 회 원		직무회원 이외의 전력기술인	70,000	70,000
특 별 회 원	업 체 · 단 체	특 급	300,000	3,000,000이상
		1 급	300,000	2,000,000이상
		2 급	300,000	1,000,000이상
		3 급	300,000	500,000이상
	개 인	협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50,000	50,000

비고 : <삭 제>

1. 신규가입자에 부과하는 연회비는 4분기로 나누어 가입일자가 속한 분기부터 적용하여 부과한다. 단, 특별회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16. 1. 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0. 4. 1, 2014. 7. 1)

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No.													
귀 하													
공 급 자	등록번호	1	2	0	-	8	2	-	0	2	7	4	4
	상 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성명					
	소 재 지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											
	업 태	금융·보험·서비스외				종 목		보증·용자·교육외					
작성 년월일	금 액				비 고								
. . .													
공 급 내 역													
적 요													
금 액													
위 금액을 영수함.													
.													
											취급자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지로영수증(고객용)

지로번호	7	5	3	0	5	2	8
------	---	---	---	---	---	---	---

금액		원
----	--	---

업체명(회원명)	
회 원 번 호	
회 원 구 분	
회 비 년 도	

수 납 인

사업자등록번호: 1 2 0 - 8 2 - 0 2 7 4 4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금융기관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한국 전기 기술 인 협 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삭제 〈'98. 5. 8〉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0. 4. 1, 2010.10.26, 2014. 7. 1)

회비납부자 명단 (월말보고)

월 일	회원번호	성 명	회비해당년도	회 비 내 역			비 고
				가입비	연회비	계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2.12.26, 개정 2014. 7. 1)

협회비 승계 처리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승계요청 내역】

회비 납부 내역	성명	※ 회원NO.		
	금액		납부일자	

구분	전임자		후임자	
성명				
생년월일				
변경일자				
승계금액	※	원	※	원
추가금액	※	원	※	원
변경사유				

(※ 표시된 곳은 협회의 업무담당자가 기재할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귀 협회에 납부한 협회비의 승계처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귀하